##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89

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 한정애·조인철·이수진

송옥주 • 문진석 • 이병진

한병도 • 박홍근 • 박홍배

권향엽 • 이건태 • 윤종오

이용우 • 박해철 • 정혜경

임오경 · 서영교 · 소병훈

한창민 · 이학영 · 정준호

이재명 의원(22인)

#### 제안이유

최근 노동자의 위험 업무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청소년 등 노동 문제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 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.

그런데 경제·법·통일·환경·산림·마약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·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·산업안전 및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교육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노동교육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.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

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 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).
- 나.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둠(안 제6 조).
- 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안 제7조).
- 라. 고용노동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 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 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(안 제9조).
- 마.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(안 제10조).
- 바.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

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(안 제12조).

사.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5조).

###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노동교육"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.
  - 1.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노동관계법 전반
  - 2.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헌장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
  - 3. 그 밖에 노동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
- 제3조(노동교육의 기본원칙) ① 노동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.
  - ② 노동교육은 노동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 ·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
- ③ 노동교육은 노동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노동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책무) ①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, 여성, 외국인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·단시간근로자 및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노동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동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노동교육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에 노동교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- 1. 노동교육의 정책 방향
  - 2. 제7조에 따른 노동교육 기본계획의 수립

- 3. 제8조에 따른 노동교육 추진성과의 평가
- 4. 노동교육 업무의 협력 · 조정
- 5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교육부, 여성가족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- 2. 노동계, 경영계, 학계, 노사전문가 중에서 노동교육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노동교육 기본계획 등)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 한다.
  - 1.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
  - 2. 노동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3. 노동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・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노동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 · 관리에 관한 사항
  - 5. 여성, 청소년, 외국인근로자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·단시간근로자 및 「파견근

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 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노동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

- 6. 그 밖에 노동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제8조(노동교육 추진성과의 평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노동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대상, 내용,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학교 노동교육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 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 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노동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사회 노동교육)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1.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
  - 2. 사회 노동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 관리

- 3.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
- 4. 그 밖에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1조(사업장에서의 노동교육 실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 동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노동교육센터의 지정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· 보급 지원
  - 2. 노동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  - 3. 노동교육 관련 기관·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·운영 지원
  - 4. 교육 시설・장비의 설치
  - 5. 그 밖에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- ② 제1항에 따른 노동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・연구기관 또는 「정부출

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 항에 따른 연구기관

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라. 노동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- 2. 교육과정,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을 갖출 것
- 3.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동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노동교육센터의 지정요건,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지정의 취소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동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
  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노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인증 등) ① 노동교육프로 그램을 개발·보급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교육프로그 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노동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.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 - 2.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  -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, 신청 절차,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6조(업무의 위탁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교육센터, 노동교육 관련 연구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